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6월 28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7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7월 9일

제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금액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하여 유사 사무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함.

다. 주요내용

- 현행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을 위한 표준 수수료 적용(12건)
- 신규 수수료 항목 추가 및 표준 수수료 적용(41건)
- 그 밖에 수수료 명칭 개정 및 항목 구분 정리 등(9건)

라.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 「말산업 육성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성 애

○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금액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하여 유사 사무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으로는

-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현행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표준 수수료를 징수기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신규 수수료 항목 추가, 명칭을 개정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편차가 높게 나타난 경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표준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수수료납부 형평성과 행정의 통일성 제고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과 현실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